2.5. 치매검사비 지워

- □ 대상자 선정 기준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협약병원 검사의뢰 전에 대상자가 타 병원에 입원 중은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여 검사비 지원(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간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 * 협약병원과 입원 중인 병원간에 협의가 없을 시 입원 중 외래진료는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 ※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 가능
 - 장애로 인해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SMCQ[서식 4-2] 또는 KDSQ[서식 4-3]) 결과 '인지기능저하 의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협력의사 면담 후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장애인 대상 감별검사 의뢰 시 협약병원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치매척도 검사(CDR 또는 GDS)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외 진단검사 검사비 항목에서 지원 가능

-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 ※ 단, 진단검사는 만60세 미만일 경우에 비급여로 적용되어 검사비 지원 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기준 고시 제2021-229호(행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 소득기준 판정 시 가구원 수 산정방법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절차와 동일(6.2.3.)
 -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기타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군·구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가능. 단, 사회보장 기본법 제26조(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에 따라 사회보장 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시행

<'25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871	4,720	6,031	7,318	8,530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 차상위계층은 ①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②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③ 차상위 장애인 연금, ④ 차상위 자활근로, ⑤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
- ※ 확인방법: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또는 차상위계 층 자격결정 통보문/확인서 등
- ※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 본인납부금은 영수액이 아닌 부과액 기준임

<2025년 4유형(바우처사업군) 소득재산조사 선정기준(안)>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로 한정함
 - ** <u>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전체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4유형군(바우</u>처사업군) 소득재산조사에 해당함
 - ※ <u>확인방법</u>: 자격정보(기초생활/차상위계층) 및 소득인정액은 정보연계를 통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내 확인 가능
 - ※ <u>다만,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1월에 4유형(바우처사업군) 소득재산조사 기준 적용</u> 예정으로 내부 참고용으로 조사하되 적용 이전까지는 건보소득액으로 조사 및 지원

<<u>'25년도</u>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기준 중위 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	102,613	168,410	215,933	261,360	302,462	354,964	386,684	431,294	461,699
가입자	(115,901)	(190,219)	(243,896)	(295,206)	(341,631)	(400,932)	(436,760)	(487,147)	(521,489)
지역	22,380	105,787	151,146	208,471	260,307	320,449	357,963	411,250	447,279
가입자	(25,278)	(119,486)	(170,719)	(235,468)	(294,017)	(361,947)	(404,319)	(464,507)	(505,202)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 □ 구비서류
 -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서식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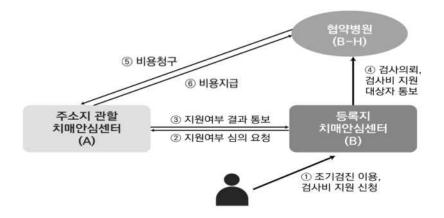
- (필요시) 아래의 경우에 따라 각 서류 제출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최근 3 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6-6] (6.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참고)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 해약계좌, 압류계좌, 타행이체거래불가계좌, 행복지킴이통장 제출 불가

<2025년 4유형(바우처사업군) 소득재산조사 구비서류(안)>

-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서식 2-4],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1부 [서식 6-7]
- (필요시) 아래의 경우에 따라 각 서류 제출
 - <u>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u>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민원)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 가능, 단 동 시스템 이용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근거 [서식 6-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 전 동의서를 받을 것(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서류 제출)
 - <u>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u> 통장사본 1부
 - ※ 해약계좌, 압류계좌, 타행이체거래불가계좌, 행복지킴이통장 제출 불가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가구구성원(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지참
 - ※ 다만,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1월에 4유형(바우처사업군) 소득재산조사 기준 적용 예정으로 내부 참고용으로 조사하되 적용 이전까지는 건보소득액으로 조사 및 지원

□ 검사비 지원 절차

-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원칙
 - 조기검진은 동일한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권고하며,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 필요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미등록된 경우에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 지원
 - 검사비 지원 절차



- ① (B)는 대상자로부터 '검사비 지원 신청서류' [서식 2-4](심의요청서류와 동일) 수취
- ②, ③ (B)는 (A)에게 지원여부 심의를 요청*하고, (A)는 (B)에 그 결과를 통보**
 - ※ (A)는 소득조사를 위한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보호자)에게 직접 추가서 류를 요청함
 - * 심의요청서류 : (B)에서 구비된 서류 일체
 - ** 심의결과통보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여부 결과 통지서' [서식 2-5]
- ④ (B)는 (B-H)에 검사의뢰와 함께 검사비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의 정보를 고지
 - * 검사의뢰 서류: '치매 검사 의뢰서' [서식 2-6]
- ⑤ (B-H)는 (B)에 검사 후 (A)에 월별로 비용청구 실시
- ⑥ (A)는 (B-H)가 비용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지급
- ※ 모든 서류는 공문 통해 송부
- ※ 지역별 상황 및 예산현황이 상이하므로, 환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 필요

□ 검사비 지원 항목

○ 진단검사

- 아래 검사항목 중에서 비용지원이 가능하며 이외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
 - * 협약병원 진단검사에 한해서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검사 필수(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진단검사 수행 시 미수행)

구 분		검 사 항 목			
	진찰료				
필수	간이정신진단검사	MMSE(나621(F6216))			
	카메치트거1	CDR(나622(F6222))			
	치매척도검사	GDS(나622(F6221))			
	신경인지기능검사	SNSBⅡ, SNSB-C(나628(FB001))			
		CERAD-K(나628(FB002))			
		LICA(나628(FB003))			
선택	노인우울척도검사	노인우울척도검사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일상생활력척도(너683(FY685))			
	치매정신증상척도검사	치매정신증상척도(너683(FY686))			

[※] 협약병원 비용 청구 및 지급시 본인부담금 10원 미만 단수는 절삭 (다만, 의원, 보건소의 외래 등은 100원 미만 절삭)

○ 감별검사

- 아래 검사항목 중에서 비용지원이 가능하며 이외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이용자 본인 부담
- 검사항목을 모두 실시하는 것이 원칙
 - *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제외할 수 있으나, 상한금액에 맞춰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불가

구 분	검 사 항 목				
	백혈구수(누000(01))				
	적혈구수(누000(02))				
혈액성분검사	혈색소(누000(05))				
(Complete blood Count, CBC)	헤마토크리트(누000(04))				
	혈소판수(누000(07))				
	백혈구백분율(누001)				
	소디움(누280(02))				
	포타슘(누280(06))				
전해질검사(5종)	염소(누280(03))				
	총칼슘(누280(05))				
	인(누280(04))				
신장기능검사(2종)	혈중요소질소(누230)				
	크레아티닌(누228)				
	총단백정량(누184)				
간기능검사(6종)	알부민(누188)				

구 분	검 사 항 목			
	총빌리루빈(누183)			
	알칼리포스파타제(누187)			
	AST(SGOT)(누186)			
	ALT(SGPT)(누185)			
가사시키느거리(0조)	갑상선자극호르몬(누325(01))			
갑상선기능검사(2종)	유리싸이록신(누323(05))			
혈당검사	당검사(정량)(누302)			
요산검사	요산(누231)			
콜레스테롤 검사	총콜레스테롤(누261)			
매독검사	매독 비트레포네마검사(누691)			
요검사	요일반검사 10종(누225(D2253))			
ulelel	엽산(누490(14))			
비타민	비타민B ₁₂ (누490(05))			
니어 사차어(1케미 시기)	두부 CT			
뇌영상촬영(1개만 실시)	MRI			
PACS 사용료				
진찰료				
영상 판독료				

[※] PACS, 영상 판독료의 경우 발생 시에만 지급

[※] 협약병원 비용 청구 및 지급시 본인부담금 10원 미만 단수는 절삭 (다만, 의원, 보건소의 외래 등은 100원 미만 절삭)

□ 비용 지원 범위

- 1인당 지원액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 ※ 검사비 지원은 대상자별로 1회 지원 원칙이나 사전검사 결과와 대상자의 가정환경 및 소득수준, 보건소 관내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가능
 -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협약병원 통해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
- □ 검사결과 통보 및 검진비용 청구·지급 절차
 - 협약병원의 검사결과 통보 및 검진비용 청구는 월별로 실시
 - (검사결과) 검사비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의뢰 된 자의 결과 및 진료내역을 모두 통보
 - -(비용청구) 대상자별로 진료일자, 지원받을 금액, 검사 의뢰한 치매안심센터명 등을 첨부하여 비용을 지급할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청구
 - ※ 감별검사 항목을 진단검사 명목으로 청구할 수 없음
 - ※ 협약병원 비용 청구 및 지급 시 본인부담금 10원 미만 단수는 절삭(다만, 의원, 보건소의 외래 등은 100원 미만 절삭)
 -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건강생활지원비가 차감된 대상자의 차감내역 통보
 - ※ 모든 서류는 공문 통해 송부
 - 치매안심센터의 검진비용 지급은 협약병원이 비용청구를 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지급(인당 정액 지급은 지양)
 - ※ 예산의 조기집행 및 집행현황 파악을 위하여 협약병원과 협약 시 사후 일괄 지급하는 방법은 지양